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0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 박완수·윤한홍·정동만

김기현 · 강기윤 · 배현진

이달곤 · 김도읍 · 최형두

백종헌 • 권은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제와 과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

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9천8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 9천800만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